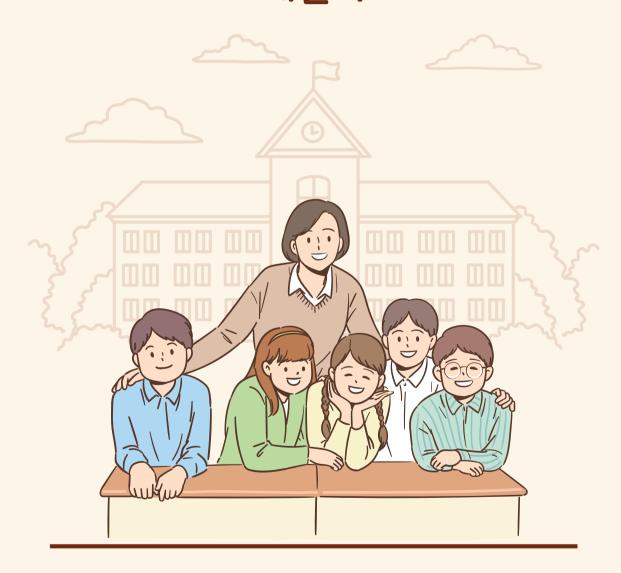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CONTENTS

1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근거	•••
	1. 법적 근거 체계 2. 관련 법령	06 07
2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안내	•••
	 학생생활지도 개요 고시 해설서 활용 유의사항 학생생활지도 지원체계 학생생활지도 관련 문의방법 	14 15 16 17
3	고시 해설 및 지도요령	• • •
	1장. 총칙 2장. 생활지도의 범위 3장. 생활지도의 방식 1. 조언 2. 상담 3. 주의 4. 훈육 5. 훈계 6. 보상 4장. 기타	20 34 42 42 44 47 49 66 68 69
4	부록	• • •
	1. 서식 2. 현장 적용 사례	80 89

1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근거

- 1. 법적 근거 체계
- 2. 관련 법령





1.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근거

 $\bullet \bullet \bullet$

1 법적 근거 체계



법적 근거 마련의 의의

- ▶ 초·중등학교의 교원이 이 고시에 따라 행한 학생생활지도는 법령과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임
- ▶ 학급 규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칙은 법령과 고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 있음. 따라서 학칙이 법령과 고시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 상위법에서 정한 바에 위배되는 사항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는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행위는 위법임('**상위법 우선의 원칙**')

2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6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29호, 2024. 10. 8. 일부개정]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학업 및 진로
 - 2. 보건 및 안전
 - 3. 인성 및 대인관계
 -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34호. 2023. 10.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 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 · 상담 ·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 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훈육)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 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 · 사용을 금지한 물품
-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후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 ·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9, 27.〉]

제17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023-34호, 2023.10.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안내

- 1. 학생생활지도 개요
- 2. 고시 해설서 활용 유의사항
- 3. 학생생활지도 지원
- 4. 학생생활지도 관련 문의방법





2.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안내

• • •

1 학생생활지도 개요

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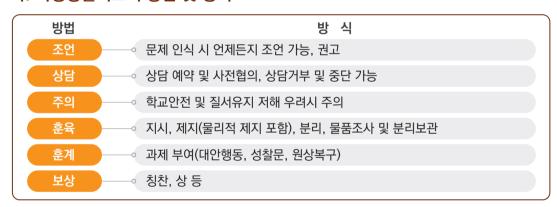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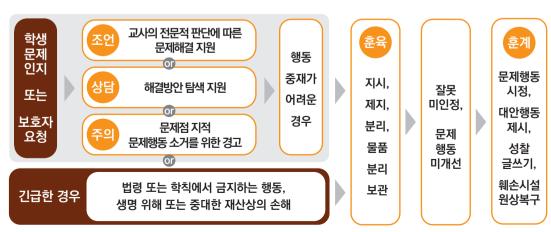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예방, 그 밖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나. 학생생활지도의 방법 및 방식



나. 학생생활지도의 절차



2 고시 해설서 활용 유의사항

- 이 해설서는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4호)에 근거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범위, 방법, 방식에 대해 상세 해설하고,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고시 조문, 해설, 지도요령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학생생활지도의 방법 및 방식을 설명하였습니다.
- 특히, 각 지도방법에 관한 정의, 실시 요건, 예시 등을 설명하여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과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는 유사사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례에 대하여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생활지도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위해 관련 서식과 현장 적용 사례를 '부록'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학생생활지도가 필요한 상황 및 맥락에 따라 개별학교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학생생활지도 지원 체계

교육부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확립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제 개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학생생활지도의 권한 및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개선
-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 판단이 어려운 법령 및 고시 적용상의 해석 및 질의에 대한 답변 지원

시·도교육(지원)청

- 법령과 고시의 범위 내에서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 지침 등 현장 적용 및 초 • 중등 학교급별 연수 지원
 - ※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등에 대한 표준안 마련, 고시 적용 등 연수 지원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제반 여건(공간, 인력, 비상벨, 예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
 - ※ (예) 퇴직교사를 활용한 긍정행동지원가(서울시교육청) 등 인력 활용, 학생 교육시간 중 활용이 저조한 민원상담실 등을 분리 장소로 겸용하는 방안 등
-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상충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조례 정비

학교장

- 학생생활지도의 주체이자 단위학교 총괄책임자로서 학생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원의 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
 - * (예) 학교구성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주기적인 애로사항 청취, 학교예산 편성시 학생생활지도 지원을 위한 비상벨 시스템, 보조인력활용, 분리 공간구축 등 예산 적극 편성, 학칙 적시 제 개정
- 학교구성원에 대하여 고시 내용에 대한 교육·연수 추진, 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담임 교사가 해결하기 힘든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 대책 수립 및 시행



4 학생생활지도 관련 문의방법

문의방법

▶ 학교

-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시 도교육청)에 질의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해석에 대한 질의는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하여야 함 (단위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단위학교의 질의(서면, 전화, 인터넷)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되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 초・중등 생활지도 담당부서에 문의
 - ※ 원활한 학교현장 지원을 위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의 질의(서면, 전화, 인터넷)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되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교육부 해당부서에 문의
- 시・도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에 공통으로 적용될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로 질의

유의사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는 다양한 교육정책(학생인권 및 학칙 개정, 교권보호,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생맞춤통합지원, 특수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의 해당업무 담당부서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고시 해설 및 지도요령

1장. 총칙

2장. 생활지도의 범위

3장. 생활지도의 방식

4장. 기타





[장·총칙

 \bullet \bullet

1 목적

₩ 관련 조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설

-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이 고시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지침과 학생의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 3주체 (학생·학교의 장과 교원·보호자)의 책무 등이 규정됨
-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 분야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지도 방법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이 있음

지도요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생활지도는 이 고시의 적용을 받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이 고시의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지도를 하여야 함
- 이 고시의 내용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기준이며, 고시에 근거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해당함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 예시

- 법령에 의한 행위
 - 형의 집행 범인에 대한 체포행위
- 업무로 인한 행위
 - 의사가 환자의 다리를 절단 감염병 환자의 격리 조치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 ④ 긴급성
 - ⑤ 해당 행위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함

관련 판례 정당행위의 요건 및 사례

▶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98도2389 판결, 2001도5380 판결 -

🗇 참고

- "학교의 장"이란「초·중등교육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장의 임무를 부여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교원을 말함
 - 학교의 장 또는 교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사람,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교장 직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교직원을 포함한 개념임
-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교장 · 교감 · 수석교사 및 교사를 총칭함
 -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의 자격을 갖추고 교사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소속 학교에서 그 임용형태 (기간제, 시간제 등), 담당과목, 담당직무(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등)와 무관하게 동일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부여받음
 - ※ 산학겸임교사 · 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이하 '산학겸임교사 등'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서 교원과 구분하고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교원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학교의 장과 교원을 보조하여 생활지도에 참여할 수 있음

2 정의

₩ 관련 조문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③ 해설

- 학생: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학적(學籍)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함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 평가되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 교육활동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됨

교육활동의 구체적 사례

-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 하교 시간의 활동
- 휴식 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 시간의 활동
-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의 활동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 체험, 직장 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의 활동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의 활동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의 활동
- 학생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지도 행위임
 -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학교폭력, 위해·위험요인 등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 등 학생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정의는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생활지도와 달리, 생활지도의 주체, 시기, 지도 범위, 방법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음

법령 및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 (주체) 학교의 장과 교원
- (시기) 교육활동 과정 중으로서 고시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동안을 의미함. 다만, 고시 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일시 및 방법에 따른 상담은 교육활동 과정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
- (지도범위)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고시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그 지도범위를 정하고 있음
- (방법) 학생생활지도는 징벌이 아닌 "지도 행위"임을 분명히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3에 의한 생활지도 방법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 지도방식을 고시 제3장에서 정하고 있음
- 조언 : 말과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로서, 당사자에게 대면하여 전하는 말과 글뿐만 아니라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형태를 모두 포함함
- 상담 : 학생생활지도로서의 "상담"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임
 - 학생의 문제가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로서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을 권장할 수 있음
- 주의: 학생 행동의 결과로 위험 및 위해가 예측되거나 법령 및 학칙을 위반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그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 위반 가능성에 대해 지적 또는 경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말과 글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음

• 훈육 :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위하여 학생의 문제행동을 중재하는 적극적인 지도 행위로서,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의 한 방법임

고시에서 정한 훈육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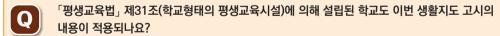
- (지시)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제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 등을 할 경우, 이를 중지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말에 의한 제지와 물리적 제지로 구분될 수 있음
- (분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서 다른 좌석이나 위치, 장소로 이동하여 학습하는 것을 의미함
- (소지 물품 조사) 학생이 특정 물품을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는 행위
- (물품 분리보관) 학생이 소지한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특정 장소에 일정 시간 내지,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의미함
- 훈계 :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로서, 말과 글을 이용하거나 훈계 사유와 관련된 과제 부여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음
- 보상 :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 · 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로서, 칭찬, 상점, 상장, 상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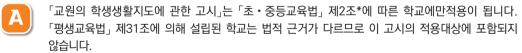
🚱 지도요령

• 법령과 고시에서 정한 학생생활지도 용어 정의는 일상적인 어휘가 가진 의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의 장 및 교원은 이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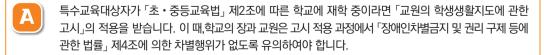
- 0&A





* 초등학교,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특수교육대상자도 생활지도 고시의 내용이 적용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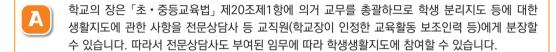


관련 법령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차별행위)
 -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부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Q 고시와 학칙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하였다면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이 고시의 내용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기준이며, 고시에 의한 학생생활지도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법령·고시·학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칙을 제·개정할 때는 이 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함(「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7조 신설, '23. 9.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교육감은 「유아교육법」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3 교육 3주체의 책무

₩ 관련 조문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해설

- 교육 3주체 :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의 장과 교원: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교장(직무대리 임용자를 포함한다)· 교감·수석교사 및 교사
 - 보호자 : 학생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학생의 부모'(학부모), 친권자가 없는 경우 학생의 후견인, 기타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학생이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 시「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에 따른 징계 또는「교원지위법」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학교의 장이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갖추도록 지원해야 하는 제반여건에는 ^①보호자 교육상담실마련, ^②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긴급 대응을 위한 비상벨 시스템 구축, ^③SPO 및 병원 등 긴급 협력 대응체계 구축 등이 포함됨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이루어지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상담 요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③ 지도요령

• 단위학교는 법령과 고시의 범위 내에서 교육 3주체의 책무를 보다 상세화하거나 구체화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지도할 수 있음



• 0&A



고시에 따른 학칙 개정 시,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거나, 학칙 개정 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 일부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나요?



학칙 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제59조의4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시 해설서의 예시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표준안(학생생활규정, 선도규정 등에 대한 시도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더라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관련 세부 지침 및 개별학교의 학칙에 따라 별도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두거나 일부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속 교육청의 지침과 소속 학교의 학칙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제32조(기능)

-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략)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
 - 학교의 장은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생활지도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학교 규칙 등에 대한 교육·연수를 제공하고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음

[학교 규칙 등에 대한 교육·연수 운영 예시]

대상	횟수	방법
학생	연 1회 이상	 학기 초 학급 단위로 실시하여 학칙과 바른 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함
교직원	연 1회 이상	• 생활지도 관련 법령, 생활지도의 요건과 예시 상황, 학생 대상 생활지도 사전 교육 방법 등을 포함함
보호자	연 1회 이상	 대면교육, 가정통신문, 핸드북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기본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교 구성원(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 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고 함께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임
-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칙 및 생활지도에 관한 내용과 각 주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령과 고시에서 부여받은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의 운영 단위 및 시기, 방법 등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구분	세부 내용(예시)		
운영 단위	• 학교 단위, 학년 단위, 학급 단위 등		
운영 시기	• 신학기 초, 학교폭력예방교육주간, 언어문화개선주간, 운동회 등 학교 행사		
	준비	• 책임규약 관련 학교 구성원 공감대 형성 • 학교 특성 및 여건 분석	
운영 방법	계획	•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계획 수립 • 책임규약 운영 단위 및 시기, 방법 결정	
	실시	• 학교 구성원 대상 취지 및 방향 안내 •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환류	실천 사례 및 소감 공유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규약 결과 공개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 예시

▶ 학생으로서의 책임

- 학교 규칙 준수, 친구나 선후배에 대한 존중과 배려, 선생님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 등에 대한 다짐이나 약속을 정합니다.
- (예)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킵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장난으로라도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지 않고, 언어폭력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합니다.

선생님의 생활지도는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학부모/보호자로서의 책임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대응 교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학칙 존중 등에 대한 다짐이나 약속을 정합니다.
 - (예)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소통합니다.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자녀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학교의 교육활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학교, 교육청, 지자체 주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합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와 소통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 교사로서의 책임

-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 조성,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 (예) 학생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합니다.

학교폭력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학부모와 소통하고 동료교사와 적극 협력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참고) 법률 등에 근거한 교육 3주체의 주요 권리·권한과 책임

구분	권리·권한	책임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에서 존중되고 보호받으며(「교육기본법」제12조제1항), 학생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받음(「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제1항) 학생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짐(「교육기본법」제3조) 학생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 또는 신체적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음(「교육기본법」제4조제1항)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되고 보호받음 (「초·중등교육법」제17조)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제 2항)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짐(「교육기본법」 제23조의3)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5제1항) 보호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2023.9.27.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5제2항)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2023. 9. 27, 「교육기본법」제13조제3항)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학교의 정책에 협조해야 함(「공교육정상화촉진법」제6조)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함(「아동복지법」제5조제1항)
교원의 권한과 책임	•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됨 (「교육기본법」제14조제1항)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한이 있음(「초·중등교육법」제20조제4항)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제2항)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위하여 노력해야함(「교육기본법」제14조제2항)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지식을 습득하게 하며,학생 개개인의 적성을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함(「교육기본법」제14조제3항)
학교의 장의 권한과 책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권한이 있음(「초·중등교육법」제20조제1항)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제8조)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제25조)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초·중등교육법」 제18조4제1항) 교육자로서 갖추어야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교육기본법」 제14조제1항)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교육기본법」 제14조제3항) 교장은 민원처리를 책임져야 함(2023.9.27.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 개정)



4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 관련 조문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해설

-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휴대전화는 통신용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학생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함
 -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음성·영상·문자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정보 검색·열람 또는 생성·저장하는 행위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활용한 음성 또는 영상 통화, 메시지 주고 받기, 음성 녹음, 영상 촬영, 메시지 검색·열람 등을 포함함
- 교육 목적의 사용은 가능함
 - 교사가 수업을 위해 활용하는 AI디지털교과서, 테블릿 PC 등은 교육 목적의 사용이므로 수업 중 사용 제한 대상이 아님
 -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교육 목적 사용을 위하여 휴대전화 사용이 부득이함을 적시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허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
 - ※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참여를 위한 보조공학기기는 교육 목적 사용으로 인정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ˌ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1항제3호 및 제4호
 - ☞ 시각장애 학생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확대경으로 사용하는 경우. 청각장애 학생이 음성의 문자 변환을 위해 태블릿을 사용하는 경우 등 시·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전자기기를 사용 시에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등에 관한 법률 지14조를 참고하여 수업 중 사용을 허용하여야 함.
 - ☞ 상체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 학생이 필기를 대신하기 위해 수업 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나 생활지도 등 학습 참여와 연관되지 않은 내용일 경우 타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녹음 또는 기록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
-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하여 사용 가능
 -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 교원이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하여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도 휴대전화 사용을 구두로 일시 허가할 수 있음

③ 지도요령

-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도 휴대전화로 간주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부득이하게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사용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허가에 필요한 절차, 신청서 및 구비 증빙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중 보조공학기기 사용 허가 시, 교육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학칙의 규정 예시

제○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③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 참고

• 0&A



학교에서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등교 시 걷고, 하교 시 되돌려주어도 되나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9항제4호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에 휴대전화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학칙의 제·개정 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 자료

▶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0.4.7.)

- 따라서 수업의 평온성 유지 등 학교 생활질서 확보 차원에서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 등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그 제한이 과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 ▶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관련 보도자료(2024.10.7., OO언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지난 2024. 10. 7.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고교에서 등교시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는 조치는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함. "중·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수거와 보관은 장점이 단점보다 적지 않고 피해 최소성을 위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한편 외국 주요 선진국들도 최근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연이어 시행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례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관련 보도자료를 명시함

- 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금지) 학부모의 비밀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
 -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내용(교사-학생 간 대화, 학생 간 대화, 학생과 제3자와의 대화 등)을 녹음 또는 실시간으로 청취
 -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고,「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이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예외적 허용) 학생의 개별 학습을 위한 녹음
 - 학생이 복습 등 개인적 학습, 기타 교육 목적으로 녹음기, 스마트폰 앱(어플) 등을 활용하여 수업 내용과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녹음은 위법이 아님. 다만,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내용을 학생이 일방적으로 녹음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사 및 타 학생의 인격권(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음.
 - ☞ 아울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교육 목적 등으로 교사의 허락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 이에, 학생이 개별 학습의 목적으로 수업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업 전에 교사에게 녹음을 신청하고 허가를 득해야 함. 다만, 교사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녹음파일이 허가된 목적 외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녹음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녹음 파일의 무단 배포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학생의 개별 학습을 위한 녹음 관련 운영 절차(안)]

사전 신청 교사의 사전 허가 수업내용 녹음 복습 등 활용 녹음의 교육적 활용 학생이 수업 전에 녹음의 당초 허가받은 내용 복습 등 학습 목적으로만 목적, 기기, 시간 등을 여부, 수업 활동에 지장을 (녹음의 목적 등)에 맞게 녹음 활용 선생님에게 밝히고 녹음 초래하는 지 여부. 수업내용 녹음 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 신청 여부 등을 감안하여 허가 여부 판단 학생(⇒교사) 학생 학생 교사(⇒학생)

庾

2장 • 생활지도의 범위



1 학업 및 진로

해 관련 조문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해설

•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함

행위 예시

-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요구
- 정당한 과제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수업에 늦게 들어오거나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
- 수업 중 엎드리거나 잠을 자는 행위
-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타 교과 공부 또는 개인과제를 하는 행위
- 수업 중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위협적 행위
- 교원에 대한 모욕 행위
- 수업 중 부적절한 행동으로 주의를 분산시켜 원활한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학습을 위한 모둠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 학생의 학업 전념에 지장을 주어, 학교 면학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에 대해 생활 지도가 가능함

소지 금지 물품 예시

- 도박 물품(포커 카드, 마작, 화투 등)
-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 휴대용 게임기
-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등
- 학생의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함

③ 지도요령

- 수업권은 교사의 권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수업권의 범위는 학습권의 보호 및 보장이라는 전제하에서만 행사될 수 있음
- 학습권은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성장·발달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권리이므로 교사의 수업권에 우선함

관련 판례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 ▶ 교원의 수업권은 교육권의 포괄적 개념 가운데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권리(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0헌마278 결정)로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학습권)의 보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교육상의 직무권한임
 - ※ 교원의 수업권은 교육기본법 등의 법령의 범위와 교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임

- 대법원 2005다25298 판결 -

🕞 참고

-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수업시간 외에 학교관리자 및 담임교사, 교과교사 등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로관련 활동*은 생활지도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음
 - * 상급학교 진학 등과 관련한 진로심리검사, 진로탐색, 진로체험, 진로설계 등

• Q&A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합니다.



학생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진로 및 진학 관련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교원은 학생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의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하여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은 자신의 개인적 신념, 가치 등이 학생생활지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학생에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보건 및 안전

₩ 관련 조문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해설

-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생활지도의 범위는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사항들이 포함됨
- 학생 자신 또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행위를 포함한 사항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생활지도 상황 예시

- 식습관 등 급식지도
-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 사이버 중독·감염병 예방 등
- 학생이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가꾸어 나가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부적절한 행위 예시

-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을 하는 행위
- 공격성 및 공격적 행동
-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
- 가출, 기타 아동·청소년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등
- 학교 안팎에서 자신의 안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행동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생활지도 상황 예시

- 통학 방법, 학교 내 통행 예절
- 위험한 장난감 및 흉기 소지 금지
- 용도를 벗어난 시설물이나 장치의 이용 등

🕞 지도요령

- 교육활동 중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학생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보건과 안전에 위협·위해가 예견되는 학생 행동 전반에 대하여 생활지도 가능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함

🗇 참고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음

「학교안전법」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 ①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 (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인성 및 대인관계

₩ 관련 조문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해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 인성 : 학생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 대인관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 간 또는 학생과 교원 등 타인 간의 상호작용 및 심리적 관계
-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이란 전인적 인격체를 완성하기 위해 학생으로서 바른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 예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미함

품성 및 예절 예시

- 친절, 봉사
- 협동, 근면, 성실
- 인사하기, 공손하게 대하기 등
-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사이버 공간을 포함한다) 등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 비록, 교육활동 중이 아닌 시간(하교 시각 이후)에 발생한 학생들 간의 부적절한 의사소통은 교원의 보호·감독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교사가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육활동 중에 생활지도가 가능함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위 예시

- 학생 간의 욕설 및 비방
- 특정 학생을 대화에서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행위
- 교직원에 대한 반말, 욕설 등의 행위
- 기타 상대방이 모욕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의사소통 행위 등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지도 가능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생활지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 및 태도 등을 지도하는 것,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바르게 대응하도록 지도하는 것,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사실관계을 파악하는 등의 지도 행위를 포함함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이라 하더라도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지도를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지도요령

- 학생 간의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신고·접수된 이후에는 반드시「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리를 하고, 경미한 경우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지도를 병행할 수 있음
 - 경미한 경우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은 관계기관 인계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관계기관 및 전문가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참고

• 0&A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로 발생한 절도, 도박, 폭력행위와 같은 범법 행위,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 등 정신병리적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연계하고, 정신병리적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그 밖의 분야

₩ 관련 조문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해설

-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교육활동 중 학생의 생활 전반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함
 - 고시 제8조의 그 밖의 분야는 고시 제5조부터 7조까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거나 오해될 수 있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생활지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임
-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은「장애인복지법」제25조,「다문화가족법」제5조제5항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활동이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다문화가족법」

-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다문화가족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단위학교가 추구하는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복 착용 등 복장에 관한 사항과 바람직한 용모 등을 지도할 수 있음

복장 및 용모 지도 사례

- 학교가 정한 교복을 미착용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
- 인종, 민족, 종교,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적대시,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 나타난 복장을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
- 과도한 노출, 과도한 성적 표현이 나타난 복장 등 학교가 추구하는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에 부적합한 복장 착용을 하지 않도록 지도 등

- 학생의 비행 및 범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저해하고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반사회적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예방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그 밖에 단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 교육 3주체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내용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 밖의 학칙으로 규정하는 생활지도 사례

- 학교시설물 이용 관련 규정
- 학생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예절
- 학교 내 개인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③ 지도요령

- 학교가 추구하는 문화에 적합한 복장과 용모에 대한 사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교육 3주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적 규범을 어긴 심각하고 명백한 학생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해서는 학교 지도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협력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

관련 판례 교원의 보호·감독 의무와 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 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의 성품과 햇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다24318 판결 -



3장 • 생활지도의 방식





조언

₩ 관련 조문

제9조(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해설

•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함

[조언의 요건]

-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등 언제든지 조언이 가능함

조언의 상황 예시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습 진학 등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 교사가 학생 면담 또는 관찰 시 교우관계·학습 등에 대한 어려움을 발견한 경우
-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정서행동검사 결과 학생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학생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 문제행동 개선 등을 위해 학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검사·상담·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생 또는 보호자가 가정 환경 및 취업 등에 대하여 교원에게 정보 제공, 해결 방안 제시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조언의 절차]

원인 분석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정보 탐색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장소 선택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조언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사후 관리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③ 지도요령

- 학생과 보호자에게 문제 상황을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음
- 학생의 문제 해결을 돕고, 교육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행동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세하게 조언하되 실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좋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생활과 관련된 조언의 내용은 상호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조언 과정 중에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징후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대응해야 함 - 공개적인 조언은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평가나 비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ᢙ 참고

• Q&A

- (조언'에 해당하는 특정 요건이 있나요?
- 조언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로 어느 때든지 조언할 수 있습니다. 조언은 학생생활지도 중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특정 요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 교육활동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가장 광범위한 생활지도 방식입니다.
- (성장을 이끌어내는 건설적인 조언'이란 무엇인가요?
-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그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 담긴 조언을 의미합니다. 학생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아닌, 학생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올바른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언'은 꼭 말과 글로만 해야 하나요?
-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생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매체 등의 자료를 함께 활용할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언'을 하였으나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조언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가급적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와의 상담이나 교육청 위센터 등을 통한 상담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담

₩ 관련 조문

제10조(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해설

- 학생생활지도 방식으로서의 상담은 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소통의 과정을 의미함
- 진로 체험의 날, 학부모 상담 주간 등 학교 행사 및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상담도 활용할 수 있음 - 상담은 학생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함

[상담의 요건]

- 학교의 장 또는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상호 간에 학습, 교우관계,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상담의 목적, 주제, 방식(유선, 대면, 서면 등), 일시*, 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학부모 상담은 수업 시간 외, 근무 시간 내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임
 - ※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학교 전화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또한 교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학생이 긴급한 사유 없이 수업 시간 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보호자가 수업 시간 중 유선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사전연락 없이 보호자가 학교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보호자 개인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보호자가 직장 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야간 또는 주말에 SNS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보호자가 폭언 또는 민원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강요하는 경우

[상담의 절차]



[상담 장소]

-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 관계 형성 및 상담내용 비밀보장 등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도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함
- 긴급 지원 요청을 위한 비상벨 시스템 및 전화기, 상담 시간 확인을 위한 알람 시계, 녹화 및 녹음* 장비 등 상담시 교원의 안전 등을 위한 시설 등 구비 필요(학교의 장은 관련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지원) *학교에서 진행되는 상담은 녹화 및 녹음이 가능하며, 상담 공간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고지하는 것이 필요함.

③ 지도요령

- 학생에게 교사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탐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담 중 대화 내용이 주변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 내용이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함
 - ※ 단, 상담 중 긴급복지, 아동학대, 성폭행, 학교폭력 등의 사실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관련 법 및 가이드 라인에 따라야 함
 - ※ 또한, 상담을 통해 드러난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권유할 수 있음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상담하는 경우 필요시 보호자의 참여도 고려할 수 있음
- 보호자와의 상담인 경우에는 상담 시작 전에 핵심 주제, 기대 목표, 상담 시간 등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음
- 필요한 경우 학교관리자나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
 -교원이 학교관리자와 공동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관리자는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함

★ 참고

Q&A

- 상담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나요?
- 공식 요청에 의한 상담인 경우에는 기록을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의 발달 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과의 가벼운 상담인 경우에는 개인 메모 형태로 핵심만 기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Q 상담을 녹음 및 녹화하려는 하는 경우에 허용해야 하나요?
- 상담에 대한 녹화 및 녹음은 상담 시작 전,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녹화와 녹음 실시에 대한 사전고지 및 동의를 확보한 후 실시합니다.
- 제10조제3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 상담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형법 제24조), 상담자, 내담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재산 등에 대한 급박한 침해 또는 위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형법 제21조, 제22조), 법적으로 상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형법 제20조) 등에 해당합니다.
- 제10조제6항과 관련하여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은 무엇인가요?
- 상담 관련 직무범위는 수업 및 학생 지도와 관련된 영역 등이 해당됩니다.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은 교사가 관여하지 않는 학생이나 학급 또는 본인이 담당하지 않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요구 등이 있습니다.
-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 상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제6항, 제7항과 같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을 때, 직무 범위를 넘어 섰을 때, 근무 시간 외에 상담을 요청했을 때, 보호자의 폭언 등으로 상담이 불가능할 때 등이 있습니다.
- Q 상담 실시을 위한 사전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합니다. '상담 요청서 작성·제출', '상담 사전 신고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상담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3 주의

₩ 관련 조문

제11조(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해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등에서 학생에게 지적과 경고를 할 수 있음
- 교원이 학생에게 지도할 수 있는 주의의 종류에는 지적과 경고가 있음

[주의의 요건]

- 자신과 타인의 정서·신체적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을 알리거나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를 줄 수 있는 경우 예시

- 학생이 수업 중 교사의 사전 허락 없이 녹음기, 전자기기, 화장품 등 수업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학생이 반복하여 교사의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 학생이 봉사 시간(청소 시간 등)에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학생이 지나친 장난을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 교실, 급식실, 특별실 등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하려고 하는 경우
- 학생이 욕설과 비속어 모욕적인 말 등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 학생이 신체적인 폭력을 사용하려 하는 경우 등

조 지도요령

- 주의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한 즉시 시행하되, 문제행동의 정도와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의는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학생이 주의를 받는 목적과 이유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관련 판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주의

- ▶ 동아리 도우미(학부모)가 학교 합창부 연습실에서 아동이 자리를 몰라 어디에 앉아야 할지 물어보자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아동에게만 "빨리 앉아"라고 소리치며 위협적으로 말하여 정서적 학대
 - ⇒ (학대 불인정) 합창부 담당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합창부원들을 조용히 시키거나 연습에 집중하도록 할 목적이 확인되어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광주고법 2021노1162 -

-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주의를 줄 경우 경멸, 비난, 조롱, 타인과의 비교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학생이 주의의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생 보호자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음

관련 판례 공개적인 장소 및 주의 반복

- ▶ 교사가 아동A(7세)가 작성한 일기를 검사하던 중 자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동의** 일기를 다른 급우들이 듣도록 크게 읽은 후 아동에게 "내가 뭘 했다고 말 공격해? 얘들아 선생님이 말 공격했니? 혼내야 돼?"라고 말하고, 아동B(7세)가 반 친구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면 반 친구들로 하여금 아동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도록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
 - ⇒ (학대 인정)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피해아동들 4명) 등 고려

-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3627 -

◈ 참고

• 주요 O&A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의'를 준 후에만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학생이 법령 또는 학칙에서 금지하는 행동을 하거나, 생명 위해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바로 '훈육' 및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문

제12조(훈육)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후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해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조언, 주의 등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긍정적 행동 변화가 없을 경우 학생에게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을 할 수 있음

③ 지도요령

• 생활지도를 위해 훈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함

관련 판례 인격이 존중되는 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교육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이러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되, 그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구 「초·중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그렇다면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신분적 특성과 학교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의 학교교육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존중하더라도,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 내용의 자발적 수용성, 교육적·인격적 측면의 유익성,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22두39185 -

- 학교의 장 및 교원은 수업 방해 등 문제 학생 행동을 훈육하기 위하여 법령과 학칙 내에서 적절한 교육 방법을 선택할 권한이 있음
 - ※ 학교·학급의 학칙과 교육환경, 학생의 유형·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생활지도 방법의 적절성 판단

관련 판례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 선택

▶ "학급 담당교사는 수업 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하여 시행한 교육 방법이 위와 같은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 및 학급의 교육환경, 학생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채택한 교육방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교육방법이 당해 학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에 해당되거나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2다95134 -

• 학생을 훈육하는 경우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 및 체벌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관련 판례 폭언 및 폭력의 금지

- ▶ 교사가 아동이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 필요 없어, 쓸모없는 아이야, 너 같은 건 여기 없어도 돼,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아동의 책가방과 신발가방을 복도에 집어 던지고 아동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강제로 복도에서부터 계단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해 신체적 학대
- ⇒ (학대 인정) 비록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고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태양 자체로 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교사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아동의 나이, 교사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65 -

- ▶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수업 중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앞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따라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는데, 같은 반 학생인 피해아동이 율동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하는 등 신체적 학대
- ⇒ (학대 불인정)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때 타당한 교육행위로 봄

- 대법원 2021도13926 -

가. 지시

- 지시는 학생의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조치를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 과제를 부여하는 지시를 할 경우 학생의 수준에서 수행이 가능한 과제을 부여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완료 이후 그에 따른 교육적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지시의 요건]

- 학생의 학업과 진로의 성장 및 발전, 안전한 학교생활 등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시가 가능한 경우 예시

- 교육활동 중 친구와의 지나친 잡담·장난을 중단하도록 지시
- 수업 시간에 늦어 일과 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
- 등·하교시 안전한 이동 수단을 활용하여 통학하도록 지시
-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
-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을 중지하도록 지시
-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해당 놀이를 금지시키거나 적당한 장소로 이동을 지시
- 수업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정당한 질문에 대한 말대꾸. 비아냥 등 중지 지시
- 과제를 요구한 기간 또한 시간 내에 작성하지 못한 경우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해당 과제를 완료하도록 지시 등

③ 지도요령

• 지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안전사고 예방, 건강 등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관련 판례 학생의 건강을 위한 정당한 지시

- ▶ 교사가 월요일마다 아동들에 대하여 소변검사 키트에 의한 소변 검사를 받게 해 정서적 학대
- ⇒ (학대 불인정) 지속적으로 흡연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교사가 아동들의 흡연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흡연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를 하기 위하여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던 점, 소변검사는 소변 중 코티닌량을 측정함으로써 흡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고 소변검사 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이는 점, 소변검사가 통상적인 건강검진과 같이 아동들이 직접 소변을 종이컵에 받아 이를 교사에게 제출하면 교사가 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 소변 검사로 아동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나 소변 검사를 통한 흡연여부 확인과 그에 따른 지도로 청소년의 흡연 확산 방지 및 건강 보건 증진의 목적 달성 기대됨

-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노406 -

• 지시로 인한 과제 수행시에도 식사,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휴식권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고

Q&A

- Q 학교급별, 학생별 지시는 어떻게 달라야 하나요?
- 학교급별, 학생별로 발달 단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최고 전문가는 현장 교사입니다. 개별 교사별로 기준을 잡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학년 협의회 또는 전체 교사 협의회를 통해 학년 규정, 학교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정당한 지시와 부당한 지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형식적으로는 학칙 등에 언급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교사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가 학생의 지적·정의적·행동적 능력을 함양하여 전인적인 인간으로 발달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 조문

제12조(훈육)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해설

-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구두로 제지할 수 있음. 구두 제지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의 학교장 보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음
 - ※ 금지 행동 예시: 교육 목적 외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일과 중 무단 외출 등
-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동,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당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 단, 물리적 제지를 당하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실시해야 함
 - *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심사 중으로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는 자해, 흉기 위협, 폭행, 기물 파손 등이 해당되며, 물리적 제지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처럼 소극적 수준의 행위,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이 적극적인 행위가 포함됨
 - ※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여부, 기타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긴급한 상황 예시

- 고층 난간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경우
- 도구 등을 활용하여 자해를 하는 경우
- 공구(실습실), 화학물품(과학실 등),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휘두르는 경우
- 인화성 물질과 화기로 인해 화재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마약성 물질 등 위험한 물질을 흡입하는 경우
- 타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가하는 경우 등

-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즉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 '물리적 제지'와 '체벌'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됨. 물리적 제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의 위해를 감소하기 위함

관련 판례 정당한 물리적 제지

- ▶ 교사가 아동이 같은 학급 여자아이들과 싸워 훈계하던 중임에도 본인 자리로 돌아가자 쫓아가 아동의 왼쪽 팔뚝 부위를 세게 잡아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찰과상 등을 가해 신체적 학대
- ⇒ (학대 불인정) 교사는 아동들을 학교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훈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른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말로 제어가 되지 않는 아동의 양팔을 잡고 그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학대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대전지법 2021고정992 -

③ 지도요령

- 구두 제지를 할 경우 감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구두 제지 시에는 문제행동에 대해서만 짧고 명료하게 실시하여야 함
 ※ 제지 시 호루라기. 전자 호루라기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
- 물리적 제지 시 특정 학생을 정확히 지정하여 교장, 교감, 주변 교실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각 교실 또는 복도에 비상벨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긴급한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한 경우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물리적으로 신체를 제지할 경우에는 제지를 당하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최소한도'에서 실시해야 함

관련 판례 정당한 물리적 제지

- ▶ 발달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아동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아동의 팔을 세게 잡는 등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기소된 사건
- ⇒ (학대 불인정) 교사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했고 이는 계속적인 일련의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음. 교사가 당시 상해나 폭행의 고의(가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_2017도12742 -

- 특수교육대상자가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행동을 보여 행동 중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화교육 지원팀은 지도·제지 방안, 전문기관 및 가정 연계 등 중재 내용을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위급한 상황시 교사는 주위 학생이나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을 하도록 하여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녹화, 녹음한 자료가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이 때, 지원팀에서의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유의하여야 함

관련 판례 생활지도 상황 촬영의 필요성

▶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 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 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 대법원 2020다227455 -



- 0&A

Q

안내하여야 합니다.

- 학생을 훈육할 때 반드시 조언, 상담, 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 제지 또는 분리를 실시 할 수 있나요?
- 일반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는 조언이나 상담 또는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훈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훈육 전에 실시하는 조언이나 상담, 주의는 사전에 이루어지면 충분한 것으로 반드시 당일에

이 경우 훈육 선에 실시하는 소언이나 상남, 수의는 사선에 이루어지면 충문한 것으로 반드시 당일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칙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구두 제지를 바로 할 수 있고,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습니다.

- 물리적 제지가 발생된 이후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요?
- 학교의 장은 학교의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 * 안내사항: 물리적 제지가 발생한 일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 등 아울러,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

다. 분리

₩ 관련 조문

제12조(훈육)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②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해설

- 분리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함
- 훈육으로서의 분리는 생활지도의 일환으로서 법령에 근거한 징계·피해자 보호 조치*와는 다르므로 「학교생활 기록의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출결상황) 기재 불필요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의 분리 조치
 - 고시 제12조(훈육) 제6항제3호, 제4호 및 제7항의 분리는 별도 공간에서 학습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출석으로 처리
 - * 학교에서 '분리지도학생 관리대장',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등을 통해 학습상황 관리 및 학습지원 방안(부록 사례 참고) 등을 마련하여 분리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함

[교실 밖 분리의 요건]

- 학생이 수업 중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를 거부하거나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분리 조치 학칙 규정 예시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 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 빙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 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정규수업 이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1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5분 이내)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②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3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기타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3, 4호의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지도요령

- 학년 초 분리공간 지정 및 분리 절차에 대한 구성원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하는 것이 좋으며,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 도구 등) 등을 확인해야 함

관련 판례 학생 분리 환경 고려 및 방임

- ▶ 피해 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당일 온도가 최고 33.8도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시 25분경 피해 아동을 복도로 내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2시경까지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
- ⇒ (학대 인정)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한 것으로 보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경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137 -

- 교실 밖 공간으로 분리 시 해당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분리 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상담 또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심사 중으로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 마련'을 명시

관련 판례 분리 시간 및 조건의 적절성

- ▶ 교사가 피해아동을 '컵타'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약 40분간 책상에 혼자 엎드려 있게 해 정서적 학대
- ⇒ (학대 불인정)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적절하고도 근본적인 훈육 방식을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0고정520 -

- ▶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피해아동을 복도로 내쫓은 후 교실 문을 닫아 다른 학생들과 차단시키고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
- ⇒ (학대 불인정) 피해아동들이 복도에 서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고, 그 사이 교실에서는 자습이 이루어졌을 뿐교사가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들이 복도에 서 있는 외 다른 신체적 또는 정서적 부담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아니었음

-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고단1707 -

• 교실 밖 분리 시 특정 공간에 학생 혼자 두고 방치해서는 안 되며 분리 공간의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함

학생 분리 지도 공간 안전 확인 사항

- 교실 바닥 및 벽체 부착물의 안전상태
- 출입문 레일 및 손 끼임 방지 시설
- 창호 안전상태(유리, 추락방지 보호시설 등)
- 칠판, 사물함, 책걸상 상태
- 안전수칙 및 대응 요령 게시 상태
- 위험한 물품. 교구 등의 유무
- 지도인력의 학생 안전 지도 관리 여부 등
- 학생이 분리 중에 지켜야 할 행동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행동 수칙을 분리 장소에 게시하여 학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관련 판례 사전 안내 후 분리 필요

- ▶ 교사가 피해아동을 혼내는 과정에서 교실 밖 복도로 피해아동을 쫓아내고 명심보감을 쓰는 벌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
- ⇒ (학대 불인정) 피해 아동만 쫓아내거나 명심보감을 쓰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동들에게도 행해진 행위로 차별적 행위라 보기 어렵고, 아동의 행위를 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감정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학대라 보기에 무리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5고단2572 -

- ▶ 교사가 아동이 손을 들지 않고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너 감금이야'라고 말하면서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
- ⇒ (학대 불인정) '수업 전에 떠들거나 수업 중에 잘못을 하면 교실에 남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다'고 미리 말한 다음 아동들을 30분~1시간 30분간 교실에 남게 하였고, 교실 안에서 이 행동을 크게 제약하지 않은 점, 다른 아동들 진술에 따르면 교실 안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고려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고단554 -

•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교실 밖 일시적 분리조치를 위한 별도 공간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별도 공간 예시) 교무실·생활지도실·학년실 등의 실내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교 내 유휴 교실이나 학생 수업 시간 중 활용되지 않는 학부모 상담실 등의 겸용 가능한 특별실 등



• 0&A



교실 내 지정된 위치에 이미 다른 학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교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지정된 위치 외에 다른 위치를 지정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업중 교실 내 분리 관련 인권위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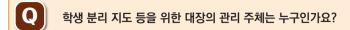
▶ 통상적인 앞자리 배치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에도, 집중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을 7일 동안 통상적인 자리가 아닌 교탁 옆에 홀로 배치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 구분 짓게 한 것으로, 학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정서적 체벌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학생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30, 19진정0807000 결정 -

- 학생이 교실 내 분리를 거부하거나 교실 내 분리를 했음에도 문제행동을 반복하여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 그런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또는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시행할수 있습니다.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별도 장소에 분리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바로 인계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또는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시 제12조제6항제4호에 따라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의 의미는 무엇이며, 분리 조치한 학생에 대한 보호자 인계를 요청하였으나 학부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은 일과 중 정규수업과 정규수업 사이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및 수업 종료 이후(방과후) 시간을 의미하며, '특정 장소로의 분리'는 교무실, 특별활동실 등 분리 조치를 위해 학칙으로 정한 별도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만약 학부모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였으나 학부모가 고의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호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정당한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지도 한 상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학교의 장은 학교 상황을 고려한 교실 밖 분리 학생 지도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계획에 따른 업무 분장 등에 따라 안전사고 관리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학생 분리 지도 시, 분리 장소 및 인계·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절차 및 장소, 인계 또는 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에 따른 각종 대장 등 문서의 총괄 관리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다만, 각 문서의 실무적인 관리 주체는 학교에서 정한 업무분장 및 위임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실외 교육활동 중 분리지도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운동장 등 실외 교육활동 시 분리 지도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관찰할 수 있고 학생이 학급의 수업 활동을 모두 볼 수 있는 장소로 일시적으로 분리하되, 분리 장소의 안전과 위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업 중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일시분리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 물품 조사 및 분리보관

₩ 관련 조문

제12조(훈육)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 · 사용을 금지한 물품
-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해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음
- 학급담당 교원은 학급생활규정을 정할 때 학급구성원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급우들과 동등하게 고려하여야 함
 -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학급생활규정에 대한 조정 또는 추가적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교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음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의 요건]

-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물품 조사 상황 예시

- 담배, 라이터, 술, 화학약품, 레이저포인터, 인화성 물질, 흉기 등의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 학교폭력, 비행(도박, 오토바이, 절도,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등에 사용될 수 있거나 사용한 물품에 대한 소지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 자해 또는 자살 등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 약물 오남용 등의 가능성이 있거나 목격한 경우
- 그 외 학칙에서 금지한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등

③ 지도요령

- 학생의 물품을 조사하고 분리 보관하는 과정에서 물품 손상 및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건장치가 부착되어있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여러 학생으로부터 비슷한 물건을 분리 보관하는 경우, 학교는 물품의 주인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때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과 동성인 교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사할 수 있음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을 제정할 때 금지된 물건과 이후 절차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시 그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함
-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 물품을 조사할 때에는 불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없음
-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때, 물품 조사 과정에서 학생 개인 신상 정보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학생 징계 조치에 따라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경우 방과후 긴급상황 등 학생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하교 시되돌려주었다가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휴대전화의 경우 기타 물품과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학년 초 분리보관 기준 및 분리보관 기간 등 에 대해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정하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안내해야 함

🗇 참고

• 0&A



2교시 쉬는 시간에 약 다섯명의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흡연 정황이 신고되었습니다.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를 할 수 있나요?



흡연 정황이 신고 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 화장실을 사용한 학생들이 흡연했을 것으로 의심되므로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물품 조사가 가능합니다.

- 확인된 물건 중 폭발물, 마약류 등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라면 학교가 보관을 해야 하나요?
-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으로 분류되는 물건일 경우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총포화약법 제2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가위, 칼과 같은 학용품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고시 제12조제9항을 근거로 학용품을 학생으로 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나요?
- 학생이 가위, 칼과 같은 학용품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교원은 고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고시 제12조제9항제1호에 따라 분리보관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예시]

	요건	분리시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1회차: 주의 실시 2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수업 종료 후: 학생에게 되돌려주기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 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せ리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 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112 신고 시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기준

① 법령과 학칙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유아교육법」 제21조의3(학교의 장 및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 학칙 및 그 외 관련 법령
- 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해설서
- ③ 학급 규칙 및 교육주체 간 협약
- ④ 교원-학부모와의 사전 협의 사항 등

※ 출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교육부 교원정책과, 2024.)

5 훈계

₩ 관련 조문

제13조(훈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③ 해설

• 훈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과 태도를 바로잡아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 의식을 함께 가지도록 지도하는 것임

[훈계의 요건]

• 학생생활지도에 따른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훈계의 예시

- 수업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에게 수업 시작 전 교과서 등을 미리 준비해 착석하여 기다리도록 해야 할 경우
- 자신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기분 등에 대하여 글로 작성해보도록 해야 할 경우
- 친구의 우유를 쏟은 학생에게 청소도구를 활용하여 닦도록 해야 할 경우
 - ※ 훈계의 과제 부여(대안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의 교육적 지도를 위해 필요에 따라 선택 또는 병행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단, 특정 행위에 대해 벌을 주기 위한 '벌 청소(지각한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것,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것 등)'는 해당되지 않음

③ 지도요령

- 훈계는 학생의 잘못에 대한 '응징' 또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수정해 주거나 바람직한 행동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도 행위임
- 평소 사제 간에 신뢰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훈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감정의 기복에 따라 훈계하거나 일회적인 훈계보다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정되도록 원칙을 가지고 일관된 훈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훈계 시 수치심 주기, 경고와 위협, 회유, 비교, 비난, 평가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대안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시설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시 교원이 현장에서 학생과 함께하며 지도해야 함



• Q&A

- 교무실, 화장실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교실을 학급 규칙으로 정하여 벌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훈계에 포함되나요?
- 징벌 목적의 벌청소는 훈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행동과 직접 관련(예: 친구의 음료수를 바닥에 엎지른 경우, 벽에 낙서를 한 경우 등)되어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계 조치로서 청소와 같은 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급 전체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학급 내 환경 정리 등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생활지도 목적의 청소 지시(제12조제2항)는 가능합니다.
-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인권위 권고를 위반하는 사항인데, 훈계 시 학생들에게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나요?
- 학생에게 강제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반성문과는 달리 성찰하는 글쓰기는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사유와 관련된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 ※ (반성문과 성찰문 차이) 반성문은 어떤 행위에 대한 외부적 판단에 근거하여 학생에게 그 판단을 인정하고 맞추도록 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성찰문은 학생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생각하여 돌아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선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Q 특수교육대상자 생활지도 시 고려할 사안은 무엇인가요?
- 독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고, 의사소통 능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색깔신호, 상황 그림 등을 활용해 학생에게 지도 상황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6 보상

₩ 관련 조문

제1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해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모범적인 행동과 바른 인성 함양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음
 - ※ 교원은 학급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보상 체제를 운영할 수도 있음

[보상의 요건]

-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고 촉진 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의해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자 노력하거나 행동이 교정되었을 경우

보상 상황 예시

-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태도를 보여준 학생
- 교원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바탕으로 교직원에게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인 학생
- 학교 외부에서 바람직한 행동과 인성으로 학교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학생
-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거나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학생
-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완료하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제시 등 창의성을 발휘한 학생
- 노력을 기울여 이전에 부족한 점을 개선했거나 발전한 학생 등

③ 지도요령

- 생활지도에 대한 보상은 학력 수준 또는 수상 실적과 관련 없이 바람직한 행동과 인성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어야 함
- 보상으로 인해 학생 간 지나친 경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여야 함 - 보상의 내용은 칭찬, 간식, 학급 쿠폰, 학급 스티커 등 교사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정할 수 있음
-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는 지나친 고가의 물품, 상품권, 기타 학생에게 부적합한 물품은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음
- 보상이 학생 행동의 강화나 소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함
- 보상 후 학생에게 왜 보상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4장 · 기라





)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관련 조문

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해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규칙과 학급생활규정에 따라 기본적인 공중도덕과 질서 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지닌 장애 특성으로 인해 학교규칙 또는 학급생활규정을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하여야 함
 - 장애의 특성에 기인한 행동일지라도 학습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본인 및 타인의 안전에 해가 될 경우 고시에 의한 생활지도 영역임을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함.

장애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예시

•만일 자폐성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정 어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과 같이 행동의 원인이 장애특성에 주로 있을 경우 생활지도와 행동중재를 병행(竝行)하며 상호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시에 의한 생활지도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에게 감각통합적 중재 등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과 자원에 대해 조언, 상담함.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 강도와 후속 반응에 따라지시, 훈육, 훈계,보상을 절차에 맞게 사용하고학생이 생활지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수신호, 상황그림 등 다양한 표현 양식을 활용함. 또한, 생활규칙 적용 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횟수 등을 늘려줄 수 있음.

행동중재 기법 활용 지도

선호도 분석을 통해 반향어로부터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개인과제를 추가하고, 어휘 반복의 횟수와 소리 강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토큰과 같은 강화물을 활용할 수 있음.

또한, 대체기술로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를 지도할

수 있음.

참고 :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교육부, 2024.10.) 개별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학지사, 2020)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분리·거부 등 차별적 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병행

+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예시

-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쉬운 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 시각적 단서로 제공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점자. 확대 문자. 수어. 자막 등을 활용
- 수업 참여를 목적으로 음성-자막 변화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수업시간 중 전자기기 활용 허용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시 학교와 가정, 사회 간 연계 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장애유형별 교수 학습 지도 방법, 긍정적 행동 지원, 보조공학기기 활용, 통합학급 운영 등
-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급의 학생 수를 1~5명 감축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해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교원이 동일한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간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 중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개별화교육 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 단, 일상적인 생활지도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까지 개별화교육계획에 일괄적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학교의 장은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행동중재지원단의 지원을 받거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음
 - * 교수, 교육전문직, 특수교육교원(행동중재 관련 연수 이수 또는 자격 소지 교사 등), 치료사, 상담교사(상담사), 의사 등
 - 학교의 장은 장애 유형·정도 및 심리·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행동의 유형과 심각성 수준에 따른 개별 지원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학교 또는 가정 방문, 교사, 보호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학생의 행동 중재 지원 정도에 따라 시도교육(지원)청 행동중재지원단, 전문기관 및 가정 연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시, 대상 학생의 결함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강점을 인식하여 긍정적 역할 모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유의 사항]

-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급에서의 문제행동으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6항에 따라 별도 공간에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의 안전과 건강,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특수학급의 교육적 기능을 위해 특수학급이 분리 조치 공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 관련 조문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9. 27.〉]

🗇 해설

- 학교의 장 및 교원이 이 고시에 근거하여 생활지도를 하였음에도 학생이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신고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사안으로 접수 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조치가 부여될 수 있고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는 「교원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 현행「교원지위법」은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하여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① 학교에 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제25조제2항)
 -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는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제1항)
-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응하여 교원의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를 말함.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교원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원지원법」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관련 법령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교현의 성당한 생활시도에 불등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당해하는 행위 〈생략〉

•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학칙에 근거하여 학생을 징계할 수 있음

🚱 지도요령

•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학칙에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의 불이행 및 거부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칙 규정 예시

제○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 조사 또는 물품 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0&A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원이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이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였는가의 판단은 학생의 특성과 지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지도 교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3 이의제기

₩ 관련 조문

제17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해설

-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학교장에게 14일 이내에 유선, 면담,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하여 관계 교원으로부터 생활지도가 이루어진 상황, 지도 필요성, 지도 방식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함
- 동일한 내용의 이의제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학교의 장은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지도요령

- 이의제기의 접수 및 답변은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개별 교원이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단위학교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이의제기는 관련되는 지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교육 3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참고

•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 개요

이의제기 접수

학생 •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내용 검토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학부모 답변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 0&A



이의제기 및 답변 기한인 "14일 이내"에는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다만, 14일째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까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민법」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4 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 관련 조문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해설

-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다음의 사항과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 ① 생활지도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8조(그 밖의 분야) 제4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생활지도의 방식과 관련하여 제12조(훈육)제6항에 따른 분리 지도시 제3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제4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
 - ③ 생활지도의 방식과 관련하여 제12조(훈육)제9항(학생 물품 분리 보관)에서 규정한 학생이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물품과 물품 분리 보관 절차·기간 등에 관한 사항
 - ④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에 따른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 지도요령

- 고시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학교별 여건과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학교 실정과 교육 3주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
- 법령의 위임을 받은 「학칙」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그 제정 절차도 법령 및 학칙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 학교의 장은 ---- (생략) ----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학칙 규정 예시]

제○장 학생생활지도

제○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생활지도고시'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8조제3호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 1. 신체의 피부를 뚫어 장신구를 삽입하는 피어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 -----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3 -----

제○조(교실 밖 분리 방법 등)

생활지도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의 분리는 〈별표1〉에 따라 지도한다.

제○조(물품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 ① 학생은 〈별표2〉의 물품을 교육활동 중에 소지·사용해서는 안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과 학생이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3. 제1항에 따라 학생이 소지 ·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 ③ 교원이 생활지도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때에는, 지도 교원의 감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지도시간 이내로 보관하고, 지도시간이 종료되면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④ 교원이 제2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물품을 분리 보관 지도를 하는 경우, 교원은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분리한 물품을 인계하고 지도일시, 물품명·사양, 지도사유를 '물품 분리보관 기록부'에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품을 안전한 곳에 3일간 보관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전이라도 보호자에게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3일간 분리 보관한 물품을 보호자가 분리 보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받도록 알려야하며, 보호자가 기한 내에 반환받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제○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조(○○○)

----- 〈그 밖에 학교에서 필요한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

〈별표1〉 생략

〈별표2〉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순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1	도색잡지
2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3	블루투스 이어폰
4	부탄가스, 본드
5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6	•••
7	•••
8	• • •

순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1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2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3	화장품 및 화장 도구
4	해당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5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6	•••
7	• • •
8	•••

5 재검토기한 및 부칙

₩ 관련 조문

고시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해설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재검토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3년 주기로 현장 교원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 검토될 예정이며, 긴급히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기한과 관계없이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도요령

- 학교의 장 및 교원은 이 고시의 시행 과정에서 고시의 적절성 등을 수시로 검토·기록하여 재검토기간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학교여건 및 학생 실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정하고 내부결재 결정 과정을 거쳐 시행
- 아울러,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위임받은 사항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4

부록

- 1. 서식
- 2. 현장 적용 사례





1 교육 3주체의 책무 규정에 대한 예시

※ 교육 3주체의 책무 등을 학교생활 안내서, 교육·연수,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규약'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3주체에게 안내할 수 있음

서식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예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생활지도 영역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분야

② 생활지도 방법

- 1.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 2.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을 위한 상담을 상호 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4.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 5.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 6.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 · 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학교구성원의 책무

-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학교장

본인은 위와 같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학 생) 학년 반 학생 이름 : (학부모) (서명)

2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정 서식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가 요청서(예시)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학생 성명							
학년 / 반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I	년 -	월	일	시		
사용 기간	ı	년 -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		휴대전화(0 인 사용 행위				기기를 포	함한다) 종류,
증빙 자료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고자 함
- ◈ 휴대전화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 ◈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3 분리

★ 서식1 분리지도학생 관리 대장

(○○학교)

날짜	2025()	분리 장소	○○실		
대상학생 (학번,이름)	분리사유	분리시간	학습지원 내용	지도교사	
10101 안00		10:00~10:20 (20')			

1. 10101 장00.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 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 서식2 특수교육대상자 ○○실(일시 분리장소) 관리 대장

얼 자 확인(서명) 학번 학생 성명 Al리안정을 위해 감각볼 10분 제공 학습을 위해 수학○○과제 제공 1. 심리안정 사유로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 **행동 발생 전·후 상황 기록** (수업담당교사)

행동 발생	생 전 상황	행동	행동 발생 후 상황
		귀를 막고 소리지름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기타	평상시와 다른	일과, 환경, 학생에 대해 기술, 교사	가 생각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 (1) 특수교육대상자가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전 후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행동 중재에 참고하기 위해 별도로 기록함이 좋으나, 상황에 따라 학교 분리지도 대장에 기입하거나 심리안정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별도 기입할 수 있음.
- (2) 교실 내 분리는 수업 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담일지 등에 기록함.

耐성 보호자 인계 확인서 예시

보호자님께

○○학교장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학칙에 따라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자께 학생을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인계에 따른 가정학습 협조사항

- 아래의 '보호자 인계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방법(예시): '보호자 인계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문의: 000-000-0000 (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이용)

2025년 00월 00일

○ ○ 학교 장 ※직인생략 가능

보호자 인계 확인서

아래와 같이 학생을 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인계 일시	인계 사유
년 월 일	교육활동 지속 방해

학생 성명		(서명)
인계자 성명		(서명)
인계자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 학생 인계는 학생의 법적 보호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제3자에게 보호자 동의 확인 후 인계 가능함.

제3자 인계	보호자 동의 여부				
제3시 근제	동의		비동의		



★ 서식4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예시)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문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

위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점검 · 확인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학교장 (서명)

성식5 교실 밖 분리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예시)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을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 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절차	담당	주요내용
사전준비	학교장 및 교직원	• 학칙 개정, 수업 방해 학생 일시적 분리 지도방안* 마련 * 분리 장소, 시간, 학습지원 방법, 실시 절차 등 • 생활지도 고시 내용 및 학칙 개정 내용 공표·홍보
_		
교실 내 분리	수업교사	 별도 분리 좌석 및 지정 위치로 이동 지시 이동 시 자신의 학습자료(교과서) 등을 지참하여 지속적 수업 참여 학생의 행동 교정 시 원래 자리로 복귀
교실 밖 분리	교장, 교감 등 지도교사	 교실 옆 복도로 분리 ※ 가능한 경우 복도에서 수업내용 청취(또는 별도 과제 부여) 별도 분리 장소(성찰실 등)로 이동 ※ 수업교사는 비상벨 시스템, 내선 전화 등 학교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직원 등에게 분리 요청 분리장소(성찰실 등)에서 대체 학습 과제 제시 및 수행 ※ 학교장에게 분리 사실 및 학습 현황 보고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 (가정학습)	학교장 (교감 등)	 보호자에게 학생 수업 방해 사유* 통보 및 인계 요청 * 교실 밖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가정에서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보호자 전달 보호자 인계확인서 작성 및 제출
후속관리	관리자, 담임교사, 교과교사 등	분리조치 학생 임장 지도 분리 장소 안전상태 점검 필요시 학생 상담(결과 누적기록 관리 등) 분리학생 상담 및 치료 권유
	보호자	 전문가 상담 및 치료 권유 시 적극 협조 보호자로서의 아동교육에 대한 책임 의무 이행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작성 및 제출

4 훈계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예시

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년	월	일	시				
 학번					학생 성명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	같을 솔 직	하게 작	성해보	세요			
1. 자신에게 있었	었던 문제 상황(친구	구와의 갈	등, 교칙	위반 등	등)은 무엇인가요?			
		11/=17		14111111		07102		
2. 사신의 행동 <u>의</u>	2로 인해 나든 사람 	남(진구, -	무보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 	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성	 상황이 재발되지 C	낳으려면	자신 스	스로 두	: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나요?		
4. 주변 사람들0	미(친구, 부모님, 선	!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	음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3?		
						년 	월	일 ——
					확인 교원 성명		(서명 <u></u>	또는 인)



2. 현장 적용 시례

• • •

※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지침이 아님에 유의



⊗ 현장 적용 사례

초등

- ◇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교내 통행 지도를 위해 학교생활을 관찰 후 일일교육계획, 학급 훈화, 알림장 등을 통해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기, 휴대폰을 보며 걷지 않기, 계단 한 칸씩 올라가기, 친구와 다투거나 괴롭히지 않기 등 구체적 지침을 조언함.
- ◎ 학생들의 모둠 활동 시작 전 의사소통 방법, 역할 분담, 발표순서, 갈등 해결 방법 등을 미리 조언함.
- ◎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조언함.

중등

- 상급학교 선택과 관련하여 학생의 흥미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의 진로심리검사를 소개하고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활용하여 관심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함.

특수

- ◎ 통합학급 내 규칙 만들기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추가
 - 1) 학생의 현행 수준을 반영한 규칙 변환 (예)아침독서 대신 색칠하기
 - 2) 규칙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 (예)교사가 박수를 세번 치면 모든 행동을 멈추고 교사를 바라본다는 규칙을 그림으로 만들어 칠판에 게시

2 상담

⊘ 현장 적용 사례

초등

- ◎ 학생이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큰 소리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문제 행동을 지속 ·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현재의 문제 상황을 알리고 행동의 개선을 위해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함.
- 담임교사는 학급 내 학생 간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 시 학생의 피해와 회복 정도를 고려해 가급적 당일 또는 빠른 시일 내에 학부모와 상담함.

중등

- ◎ 3회 이상 지도를 해도 문제 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교감 선생님이 교무실로 학생을 불러 상담함.
-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하여 담임 교사가 수회 상담하며 상담 내용을 기록한 후 교내의 전문상담교사에게 전달함. 이후 전문상담교사가 다양한 심리검사와 주기적 상담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 학부모 상담도 병행함. 특히, 학교 부적응 원인 중 진로 및 진학에 대한 불안과 관련하여 진로전담교사(학교알리미, 대학알리미, 대교협 대입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함)와 협업 상담을 진행함으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짐.

3 주의

⊘ 현장 적용 사례

조등

- ◇ 수업 중에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 사용 시, 교사는 본인과 주변 학생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줌.
- ◎ 체육 활동 중 친구의 얼굴을 향해 공을 던지거나 친구의 신체를 과도하게 잡거나 밀치지 않도록 주의를 줌.
- ❷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구가 학생들의 장난감이나 학교폭력 매개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를 줌.

중등

◎ 교과 수업 중 다른 교과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학원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교과 수업 중 타 교과 공부나 학원 과제를 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고 해당 내용을 기록 누적함.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면 기록된 내용을 보여주고 학교규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경고함.

특수

 학생이 평소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방식(그림, 제스처, 손담 등)을 모든 교원에게 공유하여 학생이 주의를 받을 때 의사소통 문제로 주의 목적과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함.



가. 지시

⊘ 현장 적용 사례

초등

-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실내화를 꺾어 신지 않도록 지시함.
-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자리에 앉지 않고 교과서 등 수업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자리에 바르게 앉고 수업 준비를 하도록 지시함.
- ❷ 친구의 몸을 잡고 놀고 있는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고 놀이하자'고 지시함.
- 수업 시간 중에 허락없이 나가지 않도록 지시함.
- 점심시간, 쉬는 시간, 중간놀이 시간에 복도에서 전력 질주를 하거나 계단 난간에서 미끄럼틀을 타는 경우, '계단 여러 칸을 점프해서 내려가는 경우 천천히 걷도록, 미끄럼틀을 타지 않도록, 계단을 한 칸 씩 천천히 내려오도록' 주의를 줌.

중등

● 과제를 해오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를 물어보고 '과제를 완료하여 내일 12시까지 교무실 내 책상 위에 놓아 두어라' 등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지시함.

특수

- 1단계의 지시에 익숙해지도록 매일 반복하여 '3단계 지시 따르기'를 지도하고 정기적인 통합교육협의회를 열어 교원 간 지도 상황 공유
 - 1단계: '멈추세요'와 같은 언어적 지시 → 수행했을 때 → 크게 칭찬
 - 2단계: 손짓 등 모델을 보여줌 → 수행했을 때 → 칭찬
 - 3단계: 손을 잡고 같이 함 → 수행했을 때 → 작은 칭찬

[출처: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중재 매뉴얼(국립특수교육원,2020)]

나. 제지

⊗ 현장 적용 사례

조등

- ◎ 학생이 본인 또는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교사는 "멈춰", "하지마", "그거(위험한 물건 등) 바로 내려놔", "뒤로 물러서"등의 단호한 말투로 구두 제지를 할 수 있으며, 구두 제지로 행동이 멈추지 않을 경우에 는 위협을 가하는 학생의 팔, 다리 등을 잡아 물리적 제지를 함. 단,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바로 물리적 제지를 가할 수 있으며, 물리적 제지를 가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사용함.
- ◎ 학칙에 주자장 등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옥상 등 위험한 곳에 있는 학생을 발견했을 때 이곳에 오지 말라고 제지함.

중등

 ◇ 수업 모둠 활동 중 학생간 역할 배정 문제로 언어 폭력이 발생함. 자칫 물리적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모든 모둠 활동을 중단하도록 제지하고 모둠 구성을 변경함.

특수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제지가 성급히 일어나지 않도록 위기행동이 나타나는 단계와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예시화하여 교원 간 공유

행동발생의 단계	적절한 반응		
0. 일상적인 상태 인하는 교사나 다른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주어지는 지시에 잘 따른다.	긍정적 지원: • "인하야,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을 잘 따르고 있구나!" • 환경과 보디랭귀지에 유의하기 • 기대되는 행동 강화하기		
1. 유발: 인하는 음료수가 마시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지금은 안돼"라고 답하자 큰 소리로 음료수를 달라고 조르기 시작하였다.	유발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 "인하야, 점심 먹고 나서 음료수 마실거야." • 긍정적이고 침착하게 대하기 • 주의 환기하기 • 자신과 타인의 보디랭귀지에 유의하기		
2. 흥분/가속: 인하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른다. "지금 바로!"	두 가지 선택: • "인하야, 잠시 자리에 앉거나, 잠깐 크게 숨을 쉬어보자." • 두 가지 선택을 제안함으로써 경계 정하기 • 팔을 하나 뻗는 정도의 거리 유지하기 • 주변을 살피기,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건들 치우기 (예. 가위, 스테이플러, 날카로운 물건들)		
3. 위기 : 인하는 교실에서 드러눕고 데굴데굴 구르기 시작한다.	안전우선/최소제한: • "인하야, 멈춰보자." • 인하에게 멈추라고 이야기한 후에는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를 멈춘다. •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한다. • 지켜보는 사람들을 이동시킨다. •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이야기한다. • 적절한 상황에서만 몸을 움직이거나 신체적 거리/방향을 변경한다.		
4. 진정 : 인하는 교실 뒤 사물함 앞에 조용히 서있다.	구조화된 완화: • 다른 요구가 바로 이어지면, 인하의 행동은 위기단계로 금세 다시 올라갈 수 있다. • 인하의 진정 과정을 잘 지켜본다. •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켜본다. • 가능하면 다른 자극은 제거한다(예. 사람, 사물, 소음, 빛 등). • 다시 자기 제어를 하기 위한 과정을 존중한다.		
5. 회복: 인하는 자리에 돌아와서 조용히 앉아있다.	긍정적 지원: • "인하야, 잘했어." •이때는 조금 전의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일정을 재개한다. •적절한 기대되는 행동이 보인다면 이에 대한 강화를 제공한다.		
6. 가라앉음: 자리에 돌아와서 30분 동안 잠이 들었다.	긍정적 지원: •인하는 일상 수준보다 지쳐있고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떤 아이들은 피곤해하고 자고 싶어 하기도 한다. •조용한 시간을 갖길 원할 수도 있다.		
[출처: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처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9)]			

다. 분리

⊘ 현장 적용 사례

초등

- (사전준비) 학칙 마련-학교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분리 계획 수립-분리 공간 마련
- ② (1호 및 2호) 지정된 좌석으로 이동하도록 지시, 주의를 줌. 수업 시간 중 일부 시간 범위 안에서 실시하되학생이 수업에 참여 의사를 보일 경우 복귀시킬 수 있음.
- ② (3호) 지정된 분리 장소로 학생 보호 인력을 통해 인계하며 수업 시간 중 일부 시간 범위 안에서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3호 이상 관리자 보고.
- ◎ (4호) 보호자가 올 때까지 분리 장소에 대기시켰다가 보호자가 오면 인계하기. 보호자가 오지 않거나 불응시 분리 장소에 학생을 보호하기. 가정학습 인계 확인서, 가정학습 확인서 받기. 상담 및 병원 등 전문기관에 연계 지도 받도록 조언하기
- (운동장 수업 중 1, 2 호) 운동장에 있는 벤치나 스탠드에 해당 학생이 분리되도록 함. 교사의 시야에 있는 장소에 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며 학생이 학급의 수업을 모두 관찰할 수 있어야 함. 학생을 모든 수업 활동에 배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한 5~10분 이내로 다시 활동에 복귀시킴.
- (체육관 및 강당 수업 중 1, 2호) 체육관 뒤 편이나 옆 쪽에 안전이 확보되고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곳에 학생을 분리시킴. 학생이 학급의 수업을 모두 관찰할 수 있어야 함. 가능한 5~10분 이내에 학생을 다시 활동에 복귀시킴.
- ② (운동장, 체육관 및 강당 수업 중 3, 4호) 인터폰이 없으므로 대표 학생에게 교무실에 가서 분리 관리주체자에게 알리고 학생 보호 인력이 해당 학생을 인계해 감.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의 학교 밖 활동 중 분리) 1, 2호는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곳에 잠시 분리시킴. 학생이 학급의 활동을 모두 관찰할 수 있어야 함. 3, 4호는 분리 장소를 마련하기 어렵고 학생을 낯선 장소에서 분리시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동료 교사 및 해당 체험학습 장소의 인력의 도움을 받아 학생을 안정시킴. 학교 관리자 및 학부모께 사안 발생에 대해서 알리고 문제 행동에 대해 학교에 돌아 와서 추수 지도를 하도록 함.
- 수업 시간 중 담임교사가 교육활동 방해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 분리 지도를 교무실에 요청할 경우 관리자나 상담교사가 학생을 인계하여 지정 장소(민원면담실)에서 분리 지도함. 추가로 분리 학생이 생기거나 관리자와 상담교사 부재 시 보결교사가 인계하여지정 장소에서 분리 지도하도록 규정에 정함.
- ②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가 필요한 수업방해 학생이 발생시 교무실로 유선 연락함-관리자가 학급으로 가서 학생 인솔하여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후 교과시간표대로 개별학습 진행함─학생의 마음이 진정되고 개별 학습지도가 진행되는 동안 학급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학급으로 인솔해주고 담임교사에게 학생 지도내용을 설명함.
- ❷ 분리 시 분리담당교사는 엄격하고 명확한 언어로 분리지도 절차 및 분리 과제 지도를 진행해야 함.
- (분리지도 체계화) 분리지도 방법 및 절차를 체계화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서 분리지도 대상자 및 다른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긴급분리가 필요할 때 분리담당자를 찾다가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연락체계를 정비. 사안발생 시 담임교사가 학교대표전화로 전화하면, 긴급도담팀에서 지도 가능한 사람이 바로해당교실로 찾아가 분리장소로 해당학생을 인솔함.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분리지도에 앞장 서고,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임시/장기 분리여부 및 생활교육 방법/수준을 팀 단위 회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함.

⊗ 현장 적용 사례

- (분리 공간 확보) 분리 공간을 따로 확보하여 교실 밖 분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교사가 다른 학생들의 수업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즉각적인 분리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임. 교무실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가벽 및 출입문 설치) 분리학생 지도를 위한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분리학생, 자원봉사자, 지도교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임.
- (분리지도관리 주체 선정) 분리지도관리 주체를 특정 교사나 관리자로 규정하기보다는 여러 담당자를 순위를 두어 정해두어, 분리지도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혹은 담당자의 부재 등 특수 상황이 나타났을 때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함. 지도감독은 학교장이 하며, 분리학생 인계는 교감(1순위), 교무실 교사(2순위), 그 외 교직원(3순위)로 역할 분담, 수업방해 행동학생지원 자원봉사자 인력 확보

중등

- 분리 학생 지도에 학교장, 교감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장, 교감 부재시 협의를 거쳐 교직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해당 교과 관련 독서 및 교과서 활용 지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진행함.
- ◎ 교무실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가벽 및 출입문 설치) 분리 학생 지도를 위한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분리학생, 자원봉사자, 지도교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임.
- (분리지도관리 주체 선정 및 분리공간 확보)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분리 지정장소 및 분리 담당자는 매년 교직원회의를 통해 연초에 지정하며, 분리 지정장소는 1차 방송실, 2차 교장실로 정함. 또한 분리담당자는 1차 교감, 2차 교장으로 정하며, 관리자 부재시 학생 분리 및 인계는 교직원이, 분리 학생 지도는 교원이 대신함.
- 규모가 큰 (중등)학교의 경우 학생들 또는 학급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멘토 또는 담당 생활지도 교사(예: 관리자, 선임교직원, 비담임교사, 비교과 교사, 부장교사 등 활용)를 지정할 수 있음. 중등학교에서 분리 발생 시 해당 수업 시간 또는 50분 이내의 시간 동안 멘토와의 시간을 갖기도 함. (유사하게, 중등학교의 경우 교과교사가 아닌 교직원(또는 관리자, 부장교사 등)을 각 학년 책임자로 배정하여, 이러한 교직원들을 학습 멘토 등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수업 시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도 함).
- (분리조치를 시행헀으나 오히려 문제행동이 강화된 사례) 지정된 장소로 분리가 되었다고 해도 문제행동 수정 (교정)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지를 풀거나 간식을 먹거나 그냥 쉬게 함. 이로 인해 학생은 분리교실로 가기 위해 문제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함. PBS와 같은 전문적인 행동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분리지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학칙으로 정하여 절차대로 지도해야 함.
- ◎ (교실탈출 아동을 분리지도한 사례) 교실을 탈출하는 아동에 대해 교무실에서 분리조치를 시행함. 교감이 아동을 지도하고 학부모를 호출하여 학부모 상담을 진행함. 학부모는 3일동안 학교에서 아이를 관찰함. 이후 아이는 병원에서 필요한 약을 처방받고 더 이상 동일한 문제행동을 반복하지 않음.
- ② (분리를 거부하는 학생을 교감이 전담하는 경우) 교사는 교사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A에게 1,2호 조치를 지시했으나 불응함. 결국 교사는 학생A에게 3호 조치를 지시하고 교감에게 분리를 요청함. 교감은 3분내에 교실에 나타나서 A를 분리하려 시도했으나 분리를 거부하며 완강히 버팀. A는 여전히 교사에게 적개심을 드러냈으나 교감이 이를 제지함.
- ◎ (분리 지도 방법 마련) 분리지도 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하여 학습 공백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 하고자 함. (중등) 분리 순간 학습 프린트를 제공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2차시부터는 실시간 원격수업을 통해 본 수업에 참여하여 학습권을 보장함.



특수

구분 (예시)	행동의 의도 및 기능	분리장소 (시간)	절차 및 유의점	지원
학습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동 (고성, 소리지르며 울기, 옷벗기, 교사에게 매달리기 등)	감각 자극 및 심리안정 추구	지정된 심리안정 장소 또는 분리지도실 (학생이 진정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감각 제어에서 기인하는 문제 행동의 경우 다른 학생의 반응이나 수업 상황이 자극을 촉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독립적이고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시킴.	촉각볼, 흔들 의자, 조도 조절, 안전 매트, 몸을 감싸는 쿠션, 스윙 등 심리안정 물품 지원 및 환경 조성 안정 후 구조화된 자율 과제 부여 또는 복귀
	학습 거부, 일탈, 의도적 수업 방해			
건강이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때리기, 물기, 물건 휘두르기, 물건 부수기, 자해 등)	의도와 기능에 상관없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	일반적인 학교 규정에 따름		

라. 물품 조사 및 분리보관

⊘ 현장 적용 사례

초등

○ 장난감 총을 학교에 가져 와서 주변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물품을 분리함. 학생으로부터 물건을 분리하여 교실 내 시건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한 후 물품 분리 보관 신고서 및 확인서를 작성함. 물품 분리 보관 확인서를 학생편에 주어 가정에 전달되도록 함. 물품 분리 보관 결재를 통해 보고함.

중등

- 휴대폰이나 유사한 기기를 학교에 가져올 수는 있으나, 학업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회, 수업, 준비 시간 등에는 전원을 끄고 눈에 띄지 않게 가방 안에 보관함.
-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한 책임 있고 허용 가능한 사용 규칙에 따라 모바일 장치를 사용해야 함. 학교는 학생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칙에 위배되게 휴대폰을 계속 사용한 경우, 해당 학칙을 근거로 휴대폰을 분리보관할 수 있음.
- ❷ 허가 받은 학생이 수업 중 허가된 목적 외의 사용시, 주의 후 휴대전화 사용을 중지 및 분리할 수 있음.
- ☑ 개인 소유 핸드폰 등 모바일 장치를 학교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5 훈계

⊘ 현장 적용 사례

초등

- 성찰하는 글쓰기를 실시할 경우, 초등학생 저학년은 글쓰기를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교사가 제시하고, 학생이 답을 적거나 구두로 답하는 방법을 사용함. 예를 들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때 ○○이는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 친구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의 질문을 활용함.
- ② 훈계의 방안으로 성찰하는 글쓰기를 실시하였는데, 학생이 바르지 않은 태도로 참여할 경우 교사는 성찰하는 글쓰기를 학생의 교육적 지도를 위해 실시함을 안내하고, 학생이 바른 태도로 참여하도록 지도함.
- 분리로 인해 분리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 학생에게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교과서를 적는 과제를 부여함 또한, 학생이 스스로의 행동을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성찰일지 작성 과제를 부여함.
- ❷ 학생이 학교 기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함을 훈계하고 이를 보호자에게도 안내함.

중등

● 선택과목 수업으로 이동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학생에 대해 문제 행동을 명확하게 설명한 후 다음 1주일 동안은 수업 시작 1분 전까지 교실에 들어와서 자신의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있도록 지시지시하거나 성찰일지 작성 과제를 부여함.



⊘ 현장 적용 사례

초등

- 행동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어떤 형태의 구역 또는 목표 보드를 활용함. 수업 중 학생들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켜 행동과 노력을 보상하거나 제재를 가함.(예: 매우 긍정적인 행동의 경우 '무지개 너머', 행동이 악화되는 경우 '먹구름 위에 앉기', 또는 가장 심각한 행동의 경우 '비 구름속'), 아이들은 숫자 척도 등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며, 아동이 특정 '점수' 수준(긍정 또는 부정)에 도달하면 보상(별 또는 인증서을 받거나 제재(교실 밖으로 이동, 교장실로 보내짐)를 함.
- ❷ 생활지도의 영역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 구두로 칭찬하거나 작은 보상품을 줌.

중등

- 모든 학생들은 각 수업 시간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나쁜 행동에 대해 포인트를 차감함. 이후 포인트를 통한 보상 '구매'가 가능하며, 이때 보상은 특정 직책 획득이나 보상 시간 획득 등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주어짐(개별 보상, 그룹 보상, 학교 상점 상품 등의 인센티브, 점심시간 탁구 시합 참여, 교장 선생님과 식사할 수 있는 특권, 학급 여행 등)
- 매달 칭찬 학생을 선정하여 학교 게시판 등에 얼굴과 이름 등을 함께 제시함(가급적 우수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
- ☑ 제재의 일환으로 아동에게 분노 관리 또는 이완 중재를 실시하는 등 행동을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한 개입이 있음. '보상'은 적절한 동기 부여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새로 고쳐질 필요가 있음.

특수

 ●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일환으로 00마켓을 열면 - (중략) - ○○마켓은 분기별로 운영하고 학급에서 받은 강화 화폐로 마켓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출처: 현장특수교육 31권 2호(국립특수교육원, 2024. 10)]

연구진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현정원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교수)

황혜영 (경기대학교 교수)

권혜원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원)

연구협력관

박혜원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최소영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교육연구관)

윤규민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교육연구사)

협력 연구진 및 집필진

홍미영 (한국교원대학교 연구교수)

이상신 (덕소초등학교 교사)

남미영 (서울명덕초등학교 교사)

이진회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김보미 (벌원초등학교 교사)

검토진

변성숙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대표)

공지훈 (목포고등학교 교사)

김민수 (목포서해초등학교 교사)

김정선 (인천새말초등학교 교사)

신동배 (서울한산초등학교 교사)

심기우 (금호중학교 교사)

신성철 (대전갑천중학교 교사)

주재우 (대전도안초등학교 교사)

최재혁 (대구대청초등학교 교사)

현운석 (고대초등학교 교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발행처 |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발행일 | 2025. 2. 20.

디자인 | 프로시디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